

인권센터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2.8.10.		16		
2	2024.7.29.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된 항공대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29.>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 13.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4.7.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교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 <개정 2024.7.29.>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장 인권센터

제1절 인권센터의 조직과 구성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인권·성평등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② 센터에는 부센터장, 팀장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와 그 소속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8.10>

제5조(인권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 절 <본절 삭제 2022.8.10>

제7조 <삭제 2022.8.10>

제8조 <삭제 2022.8.10>

제9조 <삭제 2022.8.10>

제10조 <삭제 2022.8.10>

제 3 절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

제11조(예방교육) ① 센터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센터는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무처, 사무처, 학생처 등과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제12조(예방교육의 의무화) ① 센터는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및 직원(임시직 포함)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② 센터는 본교의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 3 장 인권·성평등 상담소

제 1 절 인권·성평등 상담소의 구성과 기능

- 제13조(인권·성평등 상담소의 구성)** ① 인권·성평등상담소에는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을 두며,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상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인권·성평등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권침해, 고충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 ③ 인권·성평등상담소에 상담원을 두며, 상담원의 인권 관련 상담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 제14조(인권·성평등 상담소의 기능)** ① 인권·성평등상담소는 각종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사건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교내 성평등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집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성희롱·성폭력 행위 예방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3. 인권침해, 고충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침해행위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
 4. 인권침해, 고충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접수, 조사, 처리
 5. 인권침해, 고충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6. 인권침해, 고충민원 및 성희롱·성폭력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 절 고충심의위원회 <개정 2022.8.10>

-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29.>
 - ③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7.29.>
 - ④ 위원은 남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장이 임명직 위원으로 교원 3인, 직원 3인, 학생 3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 총 11명을 제청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피해자의 소속에 따라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 중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교원일 때 : 위원장, 교무처장, 교원 2인, 전문가 1인
- 2. 피해자가 직원일 때 : 위원장, 사무처장, 직원 2인, 전문가 1인
- 3. 피해자가 학부생일 때 : 위원장, 학생처장, 학생 2인, 전문가 1인
- 4. 피해자가 대학원생일 때 : 위원장, 대학원장, 학생 2인, 전문가 1인
- 5. 피해자가 외국인 학생일 때 : 위원장, 국제교류처장, 학생 2인, 전문가 1인

[본항 전문개정 2024. 7. 29.]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팀장 또는 부센터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7.29.>
-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⑧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4.7.29.>
-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4.7.29.>

[본조 전문개정 2022.8.10.]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본항 전문개정 2024.7.29.]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유를 기피 신청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알린다.

[본항 전문 개정 2024.7.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8.10.]
- ⑦ 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4.7.29.>

제17조 <삭제 2022.8.10>

제 3 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조사 <개정 2022.8.10.>

- 제18조(신고)**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인권·성평등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신고서를 인권·성평등상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9.>
- ③ 신고한 사람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 ⑤ 인권·성평등상담소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인권·성평등상담소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10>
- ⑥ 인권·성평등상담소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0>

- 제19조(신고의 접수)** ① 인권·성평등상담소는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
- ② 인권·성평등상담소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인권·성평등상담소는 신고서가 접수된 후 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④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센터장 및 총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0조(고충심의위원회의 소집)** 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2024.7.29.>
-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자백, 당해 사건의 경미성,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써 당해 사건을 조사하여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③ 고충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2024.7.29.>

제21조(신고의 각하) ①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22.8.10.>

1. 제3자가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의 접수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제18조 제6항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종결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22.8.10>
 4.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조치) ①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인권침해, 고충민원 및 성희롱·성폭력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고충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임시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제2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9.>
-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8.10.]

제24조(조사의 방법) ① 인권·성평등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련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사건조사를 위하여 당사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 등의 면담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4.7.29.>
- ④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전 제24조 ③항을 제24조 ④항으로 이동 <2024.7.29.>]

제24조의 2(업무방해) ①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
 - 2.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피신고인을 포함하여 사건관련인이 제2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 혹은 가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24.7.29.>

제2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연령·직업·주소·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10>
- ③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6조 <삭제 2022.8.10>

제27조 <삭제 2022.8.10>

제28조 <삭제 2022.8.10>

제29조 <삭제 2022.8.10>

제30조 <삭제 2022.8.10>

제31조 <삭제 2022.8.10>

제 4 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의 종결 <개정 2022.8.10>

제32조(조사결과와 보고 및 사건처리) ① 인권·성평등상담소장은 조사결과를 보고 받으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고충심의위원회가 징계 요구나 경고조치 등을 고려한다.

③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한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8.10]

제33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개정 2022.8.10>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와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2022.8.10>

제35조(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③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 경고조치의 요청) ① 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에게 벌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8.10>

② 센터장은 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에게 벌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

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당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센터장은 인권·성평등상담소의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8.10>
2.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누구라도 센터와 인권·성평등상담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5. 누구라도 인권침해 행위 또는 고충부과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경우
6. 누구라도 인권·성평등상담소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경우

제38조(징계, 경고조치 이외의 조치) ① 센터장은 징계가 부과된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징계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권고
 2.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상담, 치료 등
 3.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2차 가해 금지, 분리 조치
 4. 재발방지 각서 제출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센터장은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재차 인권침해 행위, 고충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 징계 또는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당사자의 권리)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 또는 피해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징계, 경고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② 제1항의 재심의를 신청받은 센터장은 재심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권·성평등상담소로 하여금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인권·성평등상담소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실시한 결과 재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징계에 관한 통지 및 징계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재심의 조사절차에 관해서는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0.>

제 4 장 학생생활상담소

제 1 절 학생생활상담소의 구성과 기능

제40조(학생생활상담소 구성) ① 학생생활상담소에 학생생활상담소장을 두며, 학생생활상담소장은 조교 수 이상의 교원 또는 상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생생활상담소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학생상담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③ 학생생활상담소에 책임상담연구원, 상담연구원,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41조(학생생활상담소의 구성원 자격) ① 책임상담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로 하며, 상담연구원, 객원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삭제 2022.8.10>

제42조(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 본 상담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분야
 - 가. 개인상담
 - 나. 집단상담
 - 다. 심리검사 및 해석 <개정 2022.8.10>
 - 라. 기타 상담에 관련된 전문 활동
 - 마. 진로 및 학습상담
2. 조사연구 분야
 - 가. 학생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
 - 나. 심리, 상담에 관한 조사연구
 - 다. 진로탐색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 라. 기타 연구에 관련된 행동들
3.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강좌개설) ① 상담소는 필요에 따라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특별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4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정보이용) 센터는 보유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교육 및 연구적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각 상담소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 등 센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10>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10>

제47조(기관 간 협조) ① 센터와 그 산하의 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본교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규정 및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